

꿈드림정기예탁금 특약 일부개정약관

꿈드림정기예탁금특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”을 “비과세종합저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특약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동연장되는 예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자동연장한 예금에 대하여는 이 특약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기간의 만기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<u>생계형저축</u>, <u>세금우대종합저축</u>의 대상예금이 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----- -----<u>비과세종합저축</u>----- ----- --.</p>